

이창한 / 5월+6월 / 기초GS / 6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항 총점	석차	상위%	
556358	23	13.5	36.5	1	0.51%	197
561120	22.5	13.5	36	2	1.02%	
561886	22	14	36	2	1.02%	
563057	21	15	36	2	1.02%	
562840	21.5	14.5	36	2	1.02%	
561307	23	12.5	35.5	6	3.05%	
563252	23	12.5	35.5	6	3.05%	
556203	21.5	13.5	35	8	4.06%	
561090	22	13	35	8	4.06%	
561360	21.5	13.5	35	8	4.06%	
562759	24	11	35	8	4.06%	
563185	23	12	35	8	4.06%	
562623	22	13	35	8	4.06%	
563314	22	13	35	8	4.06%	
561148	23	11.5	34.5	15	7.61%	
563508	23.5	11	34.5	15	7.61%	
561132	23	11	34	17	8.63%	
561373	20.5	13.5	34	17	8.63%	
561891	22.5	11.5	34	17	8.63%	
561900	20.5	13.5	34	17	8.63%	
562503	22.5	11.5	34	17	8.63%	
561129	23.5	10	33.5	22	11.17%	
561298	21.5	12	33.5	22	11.17%	
562284	21	12.5	33.5	22	11.17%	
111111	22.5	10.5	33	25	12.69%	
561094	19.5	13.5	33	25	12.69%	
561938	22	11	33	25	12.69%	
562938	23	10	33	25	12.69%	
556409	21	11.5	32.5	29	14.72%	
556412	21.5	11	32.5	29	14.72%	
559611	23	9.5	32.5	29	14.72%	
561283	21	11.5	32.5	29	14.72%	
561906	22.5	10	32.5	29	14.72%	
561914	22	10.5	32.5	29	14.72%	
561936	21	11.5	32.5	29	14.72%	
562288	20.5	12	32.5	29	14.72%	
556399	21	11	32	37	18.78%	
557152	24	8	32	37	18.78%	
561271	22.5	9.5	32	37	18.78%	
561293	20	12	32	37	18.78%	
561320	22.5	9.5	32	37	18.78%	
561402	23.5	8.5	32	37	18.78%	

561903	21	11	32	37	18.78%
562534	20.5	11.5	32	37	18.78%
565516	21	11	32	37	18.78%
556312	20.5	11	31.5	46	23.35%
561137	20	11.5	31.5	46	23.35%
561943	21	10.5	31.5	46	23.35%
556232	17.5	14	31.5	46	23.35%
563058	19.5	12	31.5	46	23.35%
556205	22	9	31	51	25.89%
562349	22.5	8.5	31	51	25.89%
563331	19	12	31	51	25.89%
563440	18.5	12.5	31	51	25.89%
561169	20	10.5	30.5	55	27.92%
561278	19.5	11	30.5	55	27.92%
561431	21	9.5	30.5	55	27.92%
561897	18	12.5	30.5	55	27.92%
561907	20	10.5	30.5	55	27.92%
561933	22	8.5	30.5	55	27.92%
561935	18.5	12	30.5	55	27.92%
562164	19	11.5	30.5	55	27.92%
562184	18.5	12	30.5	55	27.92%
563300	20	10.5	30.5	55	27.92%
561103	20	10	30	65	32.99%
561253	18.5	11.5	30	65	32.99%
561270	19.5	10.5	30	65	32.99%
561349	23.5	6.5	30	65	32.99%
561904	22.5	7.5	30	65	32.99%
561944	20	10	30	65	32.99%
561947	19.5	10.5	30	65	32.99%
561955	20	10	30	65	32.99%
562262	19	11	30	65	32.99%
563605	22	8	30	65	32.99%
561105	19	10.5	29.5	75	38.07%
561118	20	9.5	29.5	75	38.07%
561121	22.5	7	29.5	75	38.07%
561171	19.5	10	29.5	75	38.07%
561203	23	6.5	29.5	75	38.07%
561234	20.5	9	29.5	75	38.07%
561259	21.5	8	29.5	75	38.07%
561930	19	10.5	29.5	75	38.07%
561939	21	8.5	29.5	75	38.07%
563268	21	8.5	29.5	75	38.07%
556337	18	11.5	29.5	75	38.07%
562255	18.5	11	29.5	75	38.07%
556213	18	11	29	87	44.16%

556383	19	10	29	87	44.16%
561170	17	12	29	87	44.16%
561214	20	9	29	87	44.16%
561365	19	10	29	87	44.16%
561894	16.5	12.5	29	87	44.16%
561910	17	12	29	87	44.16%
562648	17.5	11.5	29	87	44.16%
563486	18	11	29	87	44.16%
556214	15.5	13	28.5	96	48.73%
556282	18.5	10	28.5	96	48.73%
561238	19.5	9	28.5	96	48.73%
561419	18.5	10	28.5	96	48.73%
561893	19.5	9	28.5	96	48.73%
561898	21	7.5	28.5	96	48.73%
562590	19.5	9	28.5	96	48.73%
562217	22.5	6	28.5	96	48.73%
562889	18.5	10	28.5	96	48.73%
563420	17	11.5	28.5	96	48.73%
556236	18.5	9.5	28	106	53.81%
556382	20	8	28	106	53.81%
561149	21	7	28	106	53.81%
561911	16.5	11.5	28	106	53.81%
561919	21.5	6.5	28	106	53.81%
561942	21.5	6.5	28	106	53.81%
562852	15.5	12.5	28	106	53.81%
556434	19.5	8	27.5	113	57.36%
561218	21	6.5	27.5	113	57.36%
561276	19.5	8	27.5	113	57.36%
561899	16.5	11	27.5	113	57.36%
561912	16.5	11	27.5	113	57.36%
556416	18.5	9	27.5	113	57.36%
556448	17	10.5	27.5	113	57.36%
563448	23.5	4	27.5	113	57.36%
561097	22.5	4.5	27	121	61.42%
561217	19	8	27	121	61.42%
561889	22	5	27	121	61.42%
562233	20.5	6.5	27	121	61.42%
562449	20	7	27	121	61.42%
563311	17	10	27	121	61.42%
563558	16	11	27	121	61.42%
561290	14	12.5	26.5	128	64.97%
561317	18.5	8	26.5	128	64.97%
561934	17.5	9	26.5	128	64.97%
561937	19	7.5	26.5	128	64.97%
562211	21	5.5	26.5	128	64.97%

561258	15	11	26	133	67.51%
562390	15	11	26	133	67.51%
556360	16	9.5	25.5	135	68.53%
556397	16	9.5	25.5	135	68.53%
561173	17	8.5	25.5	135	68.53%
561229	15	10.5	25.5	135	68.53%
561949	23	2.5	25.5	135	68.53%
556305	15	10	25	140	71.07%
561165	15	10	25	140	71.07%
561896	16	9	25	140	71.07%
562993	14	11	25	140	71.07%
563064	16	9	25	140	71.07%
563426	15	10	25	140	71.07%
563494	12	13	25	140	71.07%
561134	20	4.5	24.5	147	74.62%
561285	17.5	7	24.5	147	74.62%
561287	16	8.5	24.5	147	74.62%
561908	15.5	9	24.5	147	74.62%
556298	13	11	24	151	76.65%
556499	17.5	6.5	24	151	76.65%
561885	16	8	24	151	76.65%
561915	13.5	10.5	24	151	76.65%
561929	16	8	24	151	76.65%
556272	15.5	8	23.5	156	79.19%
561902	16	7.5	23.5	156	79.19%
561913	16.5	7	23.5	156	79.19%
562006	16	7.5	23.5	156	79.19%
563358	15	8.5	23.5	156	79.19%
556373	20	3	23	161	81.73%
556500	12	11	23	161	81.73%
556311	21.5	1	22.5	163	82.74%
559375	15	7.5	22.5	163	82.74%
561098	16	6.5	22.5	163	82.74%
561941	15	7.5	22.5	163	82.74%
561235	17	5	22	167	84.77%
561288	11	11	22	167	84.77%
561905	18.5	3.5	22	167	84.77%
562692	12.5	9.5	22	167	84.77%
562854	13	9	22	167	84.77%
561264	13.5	8	21.5	172	87.31%
561256	13	8	21	173	87.82%
562251	16	5	21	173	87.82%
559826	11.5	9	20.5	175	88.83%
561113	14.5	5	19.5	176	89.34%
561289	17.5	2	19.5	176	89.34%

561887	9.5	10	19.5	176	89.34%
562289	13	6.5	19.5	176	89.34%
561960	19	0	19	180	91.37%
562783	12	7	19	180	91.37%
563074	10.5	8.5	19	180	91.37%
562161	7.5	11	18.5	183	92.89%
562975	6.5	11.5	18	184	93.40%
556408	9	8.5	17.5	185	93.91%
562009	7.5	9	16.5	186	94.42%
556376	9.5	6	15.5	187	94.92%
556377	9	6.5	15.5	187	94.92%
556483	7	8.5	15.5	187	94.92%
563382	8	7.5	15.5	187	94.92%
556301	8.5	5	13.5	191	96.95%
556430	13	0.5	13.5	191	96.95%
562191	8	5	13	193	97.97%
556443	7	5.5	12.5	194	98.48%
561302	6.5	5	11.5	195	98.98%
561294	7.5	3.5	11	196	99.49%
563482	8.5	1	9.5	197	100.00%

[문제 1]

I. 서문(1)

1. 부정정

상계행위를 상품 아닌 방어행위이지만 판로 확보를 위한
가짜로써 생기므로 (제216조2항) 상품처럼 취급해, 상품
중 상계행위로 구성된 제품으로 보호제(하모) 등
구성을 유추해 가짜인지 판정한다.

2. 중복제기 의미, 처리, 요건

①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
하지 못한다(제259조). ② 소장제인 재판통일을 위한
것이다. ③ 사건을 전·회한 당사자의 소장의 등인,
판결·계속 중 계속제기이다. ~~④ 상계행위를 판로 확보를
위한 가짜로써 생기므로, 상품 중 상계행위로 구성된 제품~~

3. 항소

(1) 유죄정당 부정소

상계행위를 상품이 아니고 인공의 방어행위므로
상계행위로 구성된 제품으로 보호제(하모)도 중복제기가
아니라고 한다. 상계행위를 판로 확보를 위한
가짜로써 생기므로, 상품 중 상계행위로 구성된 제품으로
판정한다.

(2) 유죄정당 긍정소

~~판로 확보를 위한 방어행위~~ 판로 확보를 위한
가짜로써 생기므로, 상품 중 상계행위로 구성된 제품으로
판정한다.

성격으로 구성된 체질적 특성을 (판정) 010 (치환)
정수 근거 판정. (제216조 2항)

4. परिचय

(1) $\frac{1}{2} \ln \frac{1+x}{1-x}$

1.5
 (1) 1인 체임으로 시작할 경우 재판매는 이득·이윤·
 부가가치를 15%만 가산할 뿐 영외 및 상품가치
 2배가치 비과세하고, 그중에서 절반만 과세 중인 체임
 과세체임으로 하는 영세체임이 줄어들지 않다고 분석한다.

(2) 생물구조기능

1.5 비연가치로 평가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 $\pi \pi$

1. 사.계산장부중에서 사.계장부를 편성할 때 (필요) 항목은?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구하기 위해 상대항목은 자 관리번호 차이를
보정함 (타입코드).

6. 船壳板

0.5 신장기능에의 부담을 줄이는 상계항해 했더라도 그 계속 중
동의 채택으로 별상계기는 회피된다. 즉 중독성기 아니며 적당하다.

8.5/10

5. 사안의 경우

- 1.5) 신뢰수용에서 상계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다음 행위에
서 상계행위를 처리한어도 이는 행위행위의 처리에
불과하며 배상지유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동배상과
동일한 배상에 기한 손해를 바로 지출할 수 있다.

6. 사안의 경우

- 0.7) 甲의 행위상 상계행위 처리 후 배상 지기 는 배상 지지
유칙에 유치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배상 지지
%10

7. 사안(3)

1. 조장장리

- 1) 가판결이란 회계된 중복판결의 배상이 갖는 특성에 따른
국판결으로, 법정 안정성을 구제 한다. 판결 회계된
이므로 가판결이 후에 적용될지 여부 판결, 개판결
행위 판결하여 상계행위에 가판결 행위 판결 문제된다.

2. 상계행위 처리시 상판가복

- 1.5) 판결을 상계행위 처리 시 법정은 상계행위의 판결 이를
상판결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판결은 상계행위 판결 이는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이 판결하되 판결의 위반의 위반
이 있다고 판단되며, 위반 판결이므로 후지가 타당하다.

이처럼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판결 인정된자가
존재한다.

2. 기판결 객관적 범위

(1) 판결 주문 중의 판단

판결주문으로 주문이 확정된 것에 관해 기판결을
갖는다. (216조 1항). 당사자 수와 관할사가 주문에
해당도 판결주문을 신속히(결론대수 있게 하기) 5항이다.

(2) 판결 이유 중의 판단 중 상계항부

1) 기판결 인정과 취지

판결이유 중 판단이시한 상계 주장에 관하여 인정
되지 아니한 판단을 기판결 갖는다. (216조 2항)
이에 대해" (판결) 확정 시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 청구권에 대한 판결이 불의하게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상계항부 기판결 발생요건

① 자동채권이 판단된 경우이고 ② 자동채권이 소송물로
서 상판되는 채권채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동등한 경우에
③ 자동채권자의 상계해야 한다.

4. 상계의 범위

자동채권인 채 상계항부이 청구당으로 판정되지 않으면

청구항지는 배정 명의로 동일하고 청구항의 본 권리주체에게
대위권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청구항이 동일하고,
사실지주가 출원하는 행위가 많아 청구가 지연되는데
이점도 있다. 2항은 사실상이며 변경명도 구비했다
변경명도 해당 사항에 피고 등기는 아니기 아님.
따라서 공판정 변경을 적법하다.

95/9

두. 부분(2)

1. 변경명

0.5 (공판정 변경 후 다시 청구하는 (상과 같이 청구하고
예비지주, 대위권기 기한 배정명도 청구하면 (상과
같은 청구 청구 행위가 재심사청구에 미치지 아니함)

2. 두번째 변경하는 것이 상환명으로 적법한지 여부

(1) 상환명 의미

판례인 주지론은 실제법상 권리를 상환물로 본다.

따라서 사안의 변경은 권리 변경으로 상환 변경이므로
변경명에 해당함

(2) 상환명 요건

청구기각 등심상, 적회지연 안됨 것, 사실상 변경명도
적합 것, 변경명도 갖출 것 1 언급됨 (제262조, 253조)

(3) 상환명 경우

청구항지는 같은 부속한 청구항으로 기존 청구항이
인정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 적법한 상태이다.

3. 두번째 상태의 청구항 판단

(1) 문제점

보안 청구항을 두 개 청구하는 상태를 같은 수준에
유지 못한다. (267조 2항) / 인권을 침해한 청구항
취소 등을 통한 권리보장이 있음, 보안청구항 특성을
1.5

성분의 경우 항변상에서 청구항 처음 표현과 같은 것이
'보안청구항 특성을'에 대해서 다시 청구항을
수정하지 문제된다.

(2) 청구항 - 1항항목

고려하여 변경된 청구항과 변경된 청구항
구분상대이므로 / 보안청구항 특성을
2
특성상대 또는 다시 청구항을 고려하여
중복항목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히 대응하여 작성하고 있다.

(3) 청구항 - 2항항목

고려하여 변경된 청구항과 변경된 청구항
1.5
구분상대이므로 / 보안청구항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항을 작성하고 있다.

(4) 청구항

0.5 ()
 고령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다.

4. 프로그램 개발

0.5 ()
 노인건강 프로그램은 노인복지위원회에 의결되어
 각급기관에 전달된다. 따라서 예비적 연구를 실시한다.

7.5/10

1. 설문조사

(1) 설문조사

()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 예비적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연구)가 필요하다.

2.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고령자 건강의 현황을
 조사하고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한다.

(2) 설문조사

0.5 ()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고령자 건강의
 현황을 조사하고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한다.

(3) 결론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고령자 건강의
 현황을 조사하고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한다.

3. 항노기적 편견적 적법여부

판례는 1성평등을 노취하기로 선택하고, 항노성 상대
성을 변경되어 ^판노취하는 권리가 있다. 또한
항노성을 1성평등 원응을 지체로 한 항노기적 편견도
불가능하다.

4. 상의 제정

구상 1성평등은 노취적 편견으로 선택되었으므로, 2성평
등에 대해 제정에 이용되는 상을 제정하는 상은
판례에 의해 항노기적 편견을 불능하다. L결

2.5/5